

2026년 제2회 부천시 협력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계획 공고

2026년 제2회 부천시 협력기관(부천도시공사, 부천산업진흥원, 부천여성청소년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아트센터) 직원 통합채용 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의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부 천 시 장

1. 채용인원 및 시험과목

○ 채용인원 : 총 5개 기관, 27명

기관	부천 도시공사	부천 산업진흥원	부천여성 청소년재단	한국만화 영상진흥원	부천 아트센터
채용인원	20명	1명	4명	1명	1명

○ 시험과목 : 채용 분야별 2개 과목 (70문항) / [붙임 1]

- 공통과목 50문항(NCS) - 전공과목 20문항(분야별 상이)

※ NCS(직업공통능력) : 문제해결, 의사소통, 자기관리, 대인관계, 직업윤리 5개 분야(각 10문항)

※ NCS항목이 직업기초능력에서 직업공통능력으로 개편되었으니 반드시 NCS홈페이지 (<https://ncs.go.kr>)를 참조내여 개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 내용 등 : 직무기술서 (붙임 3) 참고

2. 응시자격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최종예정일)

- 주소지, 성별 제한 없음

- 연령 : 18세 이상 60세 미만 (단, 부천도시공사 행정, 수영강사 분야 예외)

※ 부천도시공사 분야별 기준(행정, 수영강사 분야)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및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청년연령 중 **18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기관별 인사규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응시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최종예정일) : [붙임 2]

▶ 공통요건과 응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원서접수 및 시험 일정

- 접수기간 : 2026. 10. 2.(금) 09:00 ~ 10. 6.(화) 18:00 【5일 간】
- 접수방법 :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 접속 후 접수
 - 부천시 홈페이지 > 부천소식 > 채용정보 > 부천시 채용공고(채용시험)
 - 해당 공고문 내 ‘인터넷 원서접수’ 클릭
 - ※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응시표 출력 : 해당 공고문 내 ‘조회하기’ 클릭

○ 시험 일정

구분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장소 공고	시험 예정일	합격 발표일	서류 제출일	서류 전형	합격 발표일	시험 예정일	
일정	10. 16(금) 전·후	10. 24(토)	10. 29(목) 전·후	11. 2.(월) ~ 11. 4(수)	11. 6.(금) 전·후	11. 10(화) 전·후	11. 19(목) 전·후	11. 24(화) 전·후

- ※ 합격자발표, 시험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반드시 부천시 홈페이지 (부천소식 ⇒ 채용정보 ⇒ 부천시 채용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4. 시험방법

- (1차 시험) 필기시험(4지 택1형, 과목별 100점 만점)
 - (합격자 결정 방법)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 득점, 전체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합격선 동점자는 합격 처리)
 -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 기본법)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함 - 대상 : 도시공사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함 - 대상 : 산업진흥원, 여성청소년재단, 만화 영상진흥원, 아트센터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장애인 (장애인고용법)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함 - 대상 : 도시공사, 만화영상진흥원, 아트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법)	과목별 만점의 3%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함 - 대상 : 도시공사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과목별 만점의 3%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함 - 대상 : 도시공사

※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단계가 있을 경우 가산점 미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세부 적용 기준 안내

- 모집분야별(공고상 최소 모집단위 기준) 필기시험단계에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 받아 합격한 인원 수는 필기시험단계 선발예정인원 수의 30% (소수점 이하 절사)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필기시험단계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모집분야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필기시험단계에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응시인원이 최종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도시공사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점 중복적용 기준

- 부천도시공사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중 1개) 중복 적용 가능
- 부천문화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아트센터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중 1개 적용(중복 적용 불가)
- 부천산업진흥원, 부천여성청소년재단 : 취업지원대상자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가능하며, 가산점 적용 대상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제출

※ 기관별 장애인 응시자 가점 기준

- (5%) 부천아트센터 - (3%) 부천도시공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2차 시험) 서류전형

- (전형방법)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합격자 결정 방법) 서류 적격자 중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필기시험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필기시험 동점자는 합격 처리)
- 서류 부적격자 발생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미달 시 필기 추가합격 진행

○ (3차 시험) 면접시험(구술시험)

- (평가방법) 5개 항목의 평가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중의 개수가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 부천도시공사의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 ※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 필기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는 불합격처리 되므로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①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별지 서식)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첨부, 서류전형 접수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진 포함 (흑백 사진, 해상도가 낮은 사진 등 본인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 불가)

※ 원서접수 필수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사진) 미첨부 시 필기시험 응시 불가

②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증명서·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첨부, 서류전형 접수 기간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전형 접수 기간[11. 2. ~ 11. 4.] : 필기시험 합격자 >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① 응시원서 1부

②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원서접수 시 입력자료 출력물)

③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④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 1부 (원서접수 시 제출한 서류 원본)

⑤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자격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졸업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 기준에 명시된 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OO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OO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⑦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발급 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 필요 시 해당기관에 경력증명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

- 비상근(시간제근무) 또는 비정규직 경력은 반드시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프리랜서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입증자료 미제출 시 근무경력 불인정)

⑧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에서 발급(직장가입자로 표시된 내역만 출력)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⑨ (최근 3년) 운전경력증명서 1부 (부천도시공사 운전 분야 지원자에 한함)

※ 정부24 및 경찰민원포털 등에서 발급

⑩ 자동차 보험 가입 내역서 (부천도시공사 운전 분야 지원자에 한함)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전자적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및 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2.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11월 24일부터 2026년 12월 23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항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부천시 행정지원과(인사팀)에 방문하시어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반환받으시거나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 시 팩스(032-625-2248) 또는 이메일(jinsungb@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여부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 032-625-225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5항
4. 우리 시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2월 23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단, 추가합격자 결정을 위해 2027년 11월 24일 이후 파기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4항

6. 응시자 유의사항

-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필수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사진) 미첨부 시 필기시험 응시가 불가하므로 접수기간 내 첨부파일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의해 시행되는 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 원서를 복수로 접수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접수를 무효로 합니다.
 - (시험절차 진행 불가)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마감 이후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의 경력,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나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경력검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복무 및 보수는 근무예정 기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부천소식⇒부천시 채용공고(채용시험)]에 게시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수습임용 기간 중 근무성적 미흡으로 인한 미임용, 수습임용 기간 중 내부규정 위반으로 인한 미임용, 사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부천도시공사 12개월, 부천여성청소년재단 6개월)
-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관 명	연락처	비 고
부천시 행정지원과	032-625-2252	시험방법, 절차 등 관련 문의
부천도시공사	032-340-0834	기관별 직무 내용 및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 관련 문의
부천산업진흥원	032-716-6412	
부천여성청소년재단	070-4457-2608	
한국만화영상진흥원	032-310-3062	
부천아트센터	032-626-3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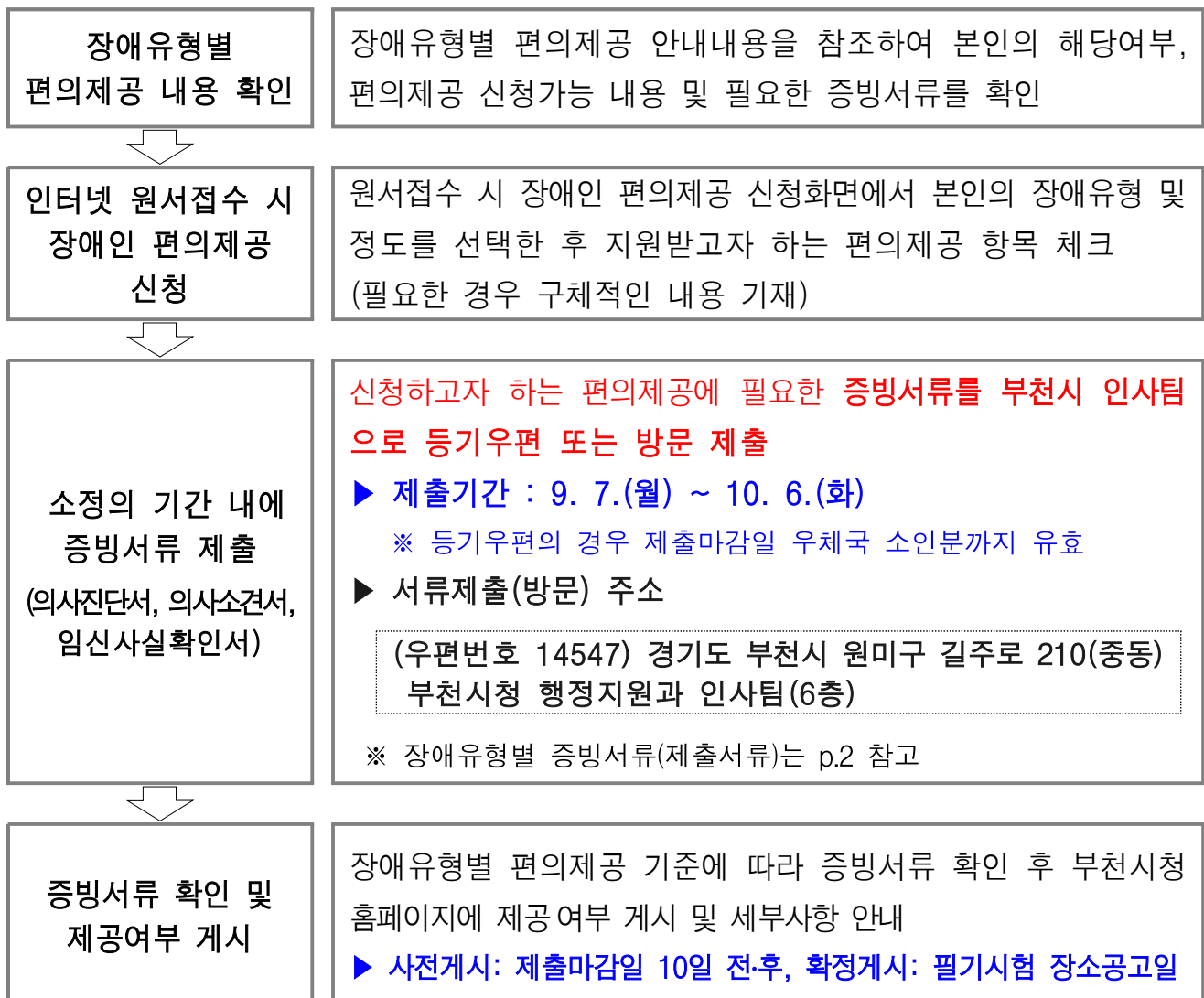
※ 공고(접수) 기간 근무시간 내 문의 가능

[붙임] 장애 유형별 편의 지원(임신부 포함)

< 편의지원 제공 대상 >

- 2026년 제2회 부천시 협력기관 직원 통합채용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 결정된 자로서,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 제공이 필요한 자

< 편의지원 제공 대상 >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범위 및 제출서류 >

장애유형 및 정도			필기시험		비고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각1부)	
지체 장애	상지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답안지 대필	복지카드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복지카드	기존 4~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심하지 않은 사람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복지카드	기존 1~6급
뇌병변 장애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선택형 시험] 답안지 대필	복지카드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의사진단서	기존 4~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복지카드	
시각 장애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복지카드 의사진단서	기존 1~2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복지카드	기존 3급 1,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복지카드	기존 4급 2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복지카드	기존 4,5급 1호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복지카드 의사진단서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이하
		·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복지카드	기존 5급 2호, 6급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심하지 않은 사람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복지카드	기존 2~6급
기타	임신부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진단서	

* 확대문제지: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 확대답안지: A3 규격의 표기형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 진단서(소견서) 제출 대상은 시험시간 연장,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 등을 신청한 자며,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 ①~③ 반드시 기재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① 장애유형 및 정도: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시력/시야: 좋은 눈 0.07,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됨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① 장애유형 및 정도: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시력: 나쁜 눈 0.02이하, 좋은 눈 교정시력 0.3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증상: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기 타		① 장애유형 및 정도: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 - 증상: 눈의 운동장애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확대 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답안지 대필을 신청할 경우

- "확대 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답안지 대필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임신부의 경우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 발급 소견서도 제출 가능
- 장애인 등 편의지원을 신청한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임신부 포함)
-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은 불가 합니다. 다만, 임신부 및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인 자로서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허용된 대상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험관리관 동행 하에 화장실 이용이 허용되며, 화장실 이용 시간도 시험시간에 포함됩니다.(화장실 이용 후 소지품 검사 실시)
-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편의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부천시 행정지원과 인사팀(032-625-22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